

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7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4. 22.

김향숙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5. 16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5. 31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향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“공용차량”, “업무담당부서” 등 용어의 정의 정비(안 제2조)
- 2) 교육·세미나·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 삭제(안 제3조)
- 3)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6조 및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15호
 - 예고기간: 2024. 4. 1.(월) ~ 2024. 4. 8.(월) [7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정의(안 제2조)
 - 25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담당부서를 명확히 정의하였음.
 - 지원범위(안 제3조)
 -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.
 - 조문 정비(안 제6조~제7조)
 -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-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 공용차량을 주말 또는 공휴일에 지원할 경우 운전원 근무 및 장시간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차량지원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5. 3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